

●환경부공고제2020-671호

환경보건센터 지정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내용>

지정분야	센터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환경보건 전문인력 육성	가톨릭대학교 환경보건센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7.27. ~ 2025.7.26.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2020.7.27. ~ 2025.7.26.
	서울시립대학교 환경보건센터	서울시립대학교	2020.7.27. ~ 2025.7.26.
	평택대학교 환경보건센터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7.27. ~ 2025.7.26.

●환경부공고제2020-67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련 업무의 권한을 위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정기점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등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나. 과태료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8)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보고를 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bini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67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 허용(안 제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분진, 폐금속류를 스스로 금속제품의 원료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생활폐기물의 신고 절차 및 방법(안 제16조의5)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실적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요건을 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 등을 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함.

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적정 관리 체계 마련(안 별표4,4의3,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폐기물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하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규정함.